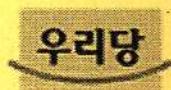


[정책토론회]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 일 시 :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0~1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1층)
- 주 쇠 : 국회의원 최규식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국회의원 최규식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433호 (784-6382)

www.kangbukzzang.net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회관 433호, 전화 : 784-6382)

[정책토론회]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주최 | 국회의원 최규식

토론회 일정

| | | |
|-------------|------|--|
| 10:00~10:10 | 개회 | 사회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인사말 :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최규식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 10:10~10:25 | 주제발제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과대학) |
| 10:25~11:05 | 토론 | 정진상 교수 (경상대 사회학) 문성호 소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박광작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황 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
| 11:05~11:15 | 휴식 | |
| 11:15~11:40 | 자유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
| 11:40~11:55 | 질의응답 | 참석자 |
| 11:55~12:00 | 폐회 | |
| 12:00 ~ | 오찬 | 장소 : 국회본청 의원식당(2F) |

목 차

■ 축 사

공안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주최하신 최규식 의원님과 발제자, 토론자 등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17대 국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17대 국회가 국회 본연의 정책입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역시 그런 맥락에서 무척 뜻깊고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됩니다.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는 토론회의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공안문제연구소'는 그동안 대다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해 수많은 책과 그림들이 이적표현물로 감정되었고 지금도 다수의 표현물이 공안의 잣대로서 감정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공안문제연구소가 내놓는 '용공성' 또는 '좌익성'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근거로 활용되어 법원의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사상검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소에 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안문제연구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학 산하의 연구소입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비롯된 학문적 연구와 창작활동에 대해 국가권력의 힘으로 재단하고 단죄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해손하는 잘못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이 후속작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정책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채 17년간을 음지에서 숨어있던 연구소가, 오늘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격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정배

■ 인사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장유식 변호사님과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님, 여러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냥 가을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헤쳐 나갈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80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이 이적혐의로 재판중입니다.

얼마전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왜 이적출판물로 감정되었는지,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 세대' 같은 교재가 '용공성향'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또한, 왜 여전히 하루 평균 40여편의 출판물이 국가기관의 연구소로부터 사상의 잣대로 감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기관이 감정한 이적표현물을 읽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내부에서도 관련 부서 담당이 아니고서는 모른다고 하는 국가기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입니다.

국민들은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하루 40편의 출판물에 대해 이적 감정을 내렸던 근거는 무엇인지, 연구소의 사상검증은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 특히 왜 그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시원스런 해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사실을,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의 탁견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공안문제연구소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규식

■ 발제문

국가보안법의 현존재, 그 프루크루스테스의 모순

- 공안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요컨대 본 문건에서 발견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고, (...)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수용, 지지하고 있으므로, '容共' 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공안문제연구소, '한청'사건 감정서 중에서)

1. 들어가기

위의 인용에 의할 경우 현재 치열한 정치적 공방의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일단의 정파들은 이미 공안문제연구소로부터 용공분자로 낙인찍힌 셈이다. 그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동조에 해당되는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안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질서이며, 이 점에서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의 저해와 관련된 사상, 조직, 이론 및 그 대책에 관한 문제"로써 공안문제의 개념을 틀 지우는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은 지나치게 편협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산주의라는 사상 내지 신념체계를 국가안전보장과 직결시키고 양자를 철저한 대립관계 속에 고정시키는 억압구

조이다. 즉, 우리 헌법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정신적 자유는 최소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상과 학술의 자유를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 운영규칙 제2조는 기본발상의 차원에서부터 사상과 학술을 국가안전보장의 적이라는 구도에서 처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안문제 연구소의 기능과 정향(orientation)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특히 남북대치상황에서 초래되는(혹은 초래된다고 주장되고 있는) ‘안보위협’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구조 또한 ‘반국가단체’를 특정하는 특별법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제적 틀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의 ‘안보위협’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정치적 신념 혹은 사상체계를 충돌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기관-공안기관-에 의하여 그 반인권적, 반법치적 원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재생산과정의 주요한-그러나 결코 중핵적일 수는 없는- 부분을 공안문제연구소가 차지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우리 헌법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하는 당대의 시대요청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 반법치적 정권안보법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공안체계의 주변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운용을 견강부회격으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공안문제연구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그 운용이 그나마의 ‘안보목적’으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천착해 보는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공안문제연구소에 관한 간략한 서술

공안문제연구소는 제5공화국까지 남영동 대공분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내외정책연구소가 1988. 10. 20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 설치되었고 1995. 12. 7 서울경찰청내에 있던 보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임무는

1.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의 제시
2.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3. 공안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개발 및 자문
4.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그 업무의 60%이상이 제4호 소정의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또한 실제 연구업무에 투여될 수 있는 직원은 1999년 현재 연구원 16명 정도이며 이들이 연간 7731건(2001년)에서부터 6665건(2002년) 정도의 문건을 감정하며 올해에는 7월까지 4940건의 문건을 감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 우리가 공안문제연구소에 관하여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달리 없다. 단지 1998년 기준 예산은 정부예산이 622 억원이며 외부 용역수입은 전혀 없으며, 연구의 고객은 국가정보

1) 이는 이 연구소의 연구부가 제1부, 제2부 및 연구분석과 등 3개의 분과로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분과 모두가 “공안관련 문서 및 출판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어 있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원, 국군기무사, 대검찰청 등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²⁾ 한마디로 국가기관이자 감정의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그 존재와 조직과 업무과정이 철저한 비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작용이 그러하듯 이러한 비밀주의에서 자의적·편의적·전단적 권력행사가 이루어진다.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는 이 연구소의 감정업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감정’의 기준이 공안적인 냉전논리에 근거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현물 전체의 맥락보다는 몇몇 문장을 문제 삼아 감정의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감정결과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61면)

요컨대, 공안문제연구소 자체가 국정원, 기무사 및 대검 등의 소위 ‘공안기관’을 주고객으로 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감정서를 주문생산하는 구조만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스스로 공안권력의 한 축에 서식하는 주변적 기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뿐이다. 즉, 이 주문생산의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 연구소의 업무행태 자체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어떠한 접근통로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생산기관으로서의

2) 대우경제연구소·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1999:
<http://university.seoul.co.kr/down/T021/End.hwp> (2004. 9. 20 방문)

그 기능을 상실하는 한편, 그 존재조차도 국가보안법의 운명에 달리게 되는 파행성을 겪게 된다. 침대와 칼로써 전횡을 일삼은 프루크루스테스는 약탈의 주체이기라도 했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침대와 칼은 가지되 약탈적 법률에 기생하는 종속적 존재에 그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구체적 사안에 있어 그것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통치·정치권력→검찰·사법권력→국정원·경찰·기무사권력으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보충적 정당성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작업을 통하여 무엇이 국민들에게 허용되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은연중에 공표하는 일종의 국가검열의 기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을 바꾸어 살펴 보자.

3. 공안문제연구소1 - 그 실체적 문제점

3.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법리

- 중대·명백한 위험에 대한 인식부재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그 직무영역에서부터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문건감정 및 분석의뢰를 받은 표현물에 대해 좌익성, 친북용공성향, 용공성, 반정부적 성향, 문제없음이라는 감정평가를 내”리는 것이다.³⁾

여기서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의 효과로서의 법금(法禁)이라는 처분적 강제는 헌법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기본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가적용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공안기관은 이 헌법적 통제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안문제연구소를 이용하고 있고,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한다.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지배하는 법리에 의하자면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호법익의 중대성, 위험의 명백성·현존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혹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의구도에 따라 현존성의 요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내용이 최소한 국가안보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때 그 표현

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 헌법의 이론이며, 민주적 법치가 이루어지는 헌정국가의 기본운용원칙이다. 하지만, 공안문제 연구소는 이러한 헌법적 제한의 틀(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실제 공안문제연구소가 공안문건을 감정하면서 사용하는 분류기준인 “좌익성, 친북용공성, 용공성, 반정부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감정대상인 표현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한 정치세력 즉 “반국가단체”的 주장과의 일치여부 혹은 기존의 체제나 정권 혹은 기존의 정치세력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내리는 도구적 용어에 불과하다. 예컨대 ‘좌익성’이라는 분류기준은 “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개념규정되고, 용공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용인,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친북용공성’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 서기만 하면 해당되며, 이러한 좌익성·용공성·친북성이 없더라도 현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표현은 ‘반정부적 성향’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극히 형식적인 준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관계양상, 표현자와 수용자의 의도나 인식정도, 반론과 교정·비판의 가능성여부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적용된다. 소위 막걸리보안법과 같은 유추·확장적용의 문제나, 학술·예술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례들은 그 단적인 예시이다.

3) 위 국가인권위원회편, 보고서, 355면.

더불어,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조차도 그 실질적 내용/요건이 특정되지 못함으로써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컨대,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면 좌익성향이고 수용, 용인, 동조하면 용공성향인데, 여기서 선전선동과 수용·용인·동조의 차이-특히 표현형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암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문건의 범죄성은 문자 그대로 “귀결이 코결이”식으로 결정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⁴⁾

| 표현물 | 감정결과 |
|--|--|
|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의 뢰약별 아래 약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대구경북연합강령 전문> |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대구 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전통 계승 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북 통일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 용공 유인물(2000. 1. 13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김용규) |

여기서 「표현물」의 표현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감정결과이다. “북한식 민중사관”의 실체가 제시되지도 않은 채, “김일성의 항일무

4) 전계보고서, 360면.

장투쟁전통”에 대한 학계의 논쟁여부에 대한 분석·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이 왜 친북·용공과 직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다른 감정의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2002. 2. 4 공안문제연구소 오문균)

[한정의]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용공성향으로 판단됨(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정원영, 2002. 2. 26)

체제의 비판이나 김정일 답방축구 등의 문제가 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용공성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등의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이적의 고무·찬양·동조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고무·찬양·동조의 표현이다’라는식의 감정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위 대구경북연합강령에 대한 감정의견은 이 점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즉, 그것은 주사파가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주사파적 성향 즉 친북 용공 유인물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리인 「중대·명백한 위험」의 법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사상통제법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사상의 여하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의 경증과 그 발생가능성의 정도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반민주성, 몰현법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의지를 국가이데올로기로 고착시키거나 그 것으로 가장시키고 이에 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존재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국가검열의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⁵⁾

환언하자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체제가 원치 않는 세력, 혹은 지배 정치권력이 원치 않는 비판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일벌백계의 위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의 침묵상태로 퇴각해 있도록 통제하는 일종의 사상공작 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⁶⁾

5)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이 안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함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사상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된 혹은 확정된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존재하는 기준이란 국가안보의 이름을 빙 정권안보의 의지에 합치하는가의 여부일 따름이다.

6) 이 점은 공안문제연구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창출된 국가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기능 중의 첫 번째가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 이론틀 내지는 연구성과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은 역으로 이 연구소의 주된 기능이 사상통제에 주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2. 감정의 대상 - ‘책임분산음모론’

통상적으로 감정은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증거조사의 한 부분으로서 사실인정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안문제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좌익·용공·반체제성의 판단은 결코 감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판단은 그 자체가 “찬양·고무·동조”의 여부를 가름지우는 법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표현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표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실의 법포섭의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법관의 몫이 되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의 전문가는 다름아닌 법관료인 법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혹은 예비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또는 사전적 수사를 감당하는 경찰이 제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문제를 다른 제3자에게 물어보고 할 것은 아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문제연구소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체적 법판단까지 대행하고 나서는 까닭은 무엇인가? 혹은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자신이 하여야 할 판단을 유보한 채 그 판단을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하고 그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법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이런 맥락에서 염밀히 보자면 공안문제연구소가 판단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용공성 여하 등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그 발생가능성의 정도여야 한다.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여하에 대한 사실판단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폭력성을 은폐·엄폐하는 최적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자로서의 외관을 가진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로부터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문가”적 의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과 그 적용의 결과가 “정상적”이었음을 가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검찰 등의 공안기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어떠한 표현행위를 처벌하기보다는,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 판단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외관상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법집행작용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법판단이 이루어진다.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개발한 논리 중의 하나가 오늘날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나름의 일리는 있을지도 모르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주장에서는 묻혀 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제1단계는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 혐의자 혹은 피의자의 인신을 제약하고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

을 가한다.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공표 등의 방법으로 그 혐의자·피의자를 빨갱이로 낙인 찍음과 동시에 전국민을 상대로 위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발적 자기검열의 체제를 이루어 놓는다. 법원의 무죄판단, 혹은 집행유예판단은 이러한 제1차적 법집행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예가 적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이 적어졌다는 사실의 징표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1차적 법집행의 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의견은 사실상 법원의 법판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인신제약·인권침해를 좌의성·용공성의 판정으로 일단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예심 내지는 예비검속의 정당화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폭력성은 그 외형을 감추고 국가안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의 뒷면으로 물러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정의견은 법관이나 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법판단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그것은 소위 “공안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찰이 체제문제에 대한 적극적·능동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서도 유죄판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이나 검찰은 정치권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체제문제 혹은 시국관련문제에 관한 한 법판단부분을 팔호 속에 집어넣고 이를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제3자의” “전문가”적 “객관성”을 가장한 기관이 내리는 이데올로기적 판단 혹은 정세적 판

단으로 대체하거나 충당해 버리는 일종의 교묘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시국사건에서의 판결문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의견이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공소장 기재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으로 복제되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메카니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표현물- 및 그 표현주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주체와 그 정치적 판단의 정교화작업을 감당하는 기관, 이 판단을 법리적으로 정서하는 기관, 그리고 이렇게 정서된 법리를 판결문으로 재생산하는 기관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감당하는 체제,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생성해 놓은 “공안체제”인 것이다.

4. 공안문제연구소2 - 그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하지만,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황을 빌미로 체제유지를 기획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전단적 국가폭력의 행사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한, 그 폭력에 정당성의 외피를 씌워줄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게 된다. 실제, 그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찬양·고무·동조”의 표현물인가의 여부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감정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적지 않다.

최근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민주이념연구소가 대검에 설치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는 체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왜곡시켜 놓은 법치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제2절에서도 암시되었듯이, 그 연구소가 가지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독단성·자의성의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전문가적 판단을 요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여기서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그 감정자의 “전문가”적 자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즉,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이 객관적 진실로서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감정의 업무를 위탁 혹은 의뢰받은 자가 그러한 감정을 함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정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있거나

혹은 그러한 신뢰를 보낼 정도의 징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근대국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문직의 경우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자격부여의 요건으로 삼고 나름의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과의례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문가집단을 통해 그 윤리강령을 집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 감정의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뢰의 이면에서 구축되는 동업자간의 견제와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학회나 학술토론회 혹은 논문의 발표, 재훈련, 업무평가 등의 기회를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험, 인품을 구비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자극요인을 마련함으로써 당해 전문가가 자기만의 논리에 힘들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으로써 잘 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 검증과 통제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구축될 때 비로소 그 감정은 전문가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또한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업무수행의 절차·과정, 그리고 업무수행-감정평가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감정의 결과까지도 철저한 비밀주의에 힘들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가 촉발되는 과정 또한 검찰·국정원·경찰 등의 공안수사기관-공안문제연구소의 배타적·폐쇄적 용역체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외부에서 이 감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예컨대, 학술적 전문가로서의 교수가 어떠한 표현물에 대한 감정의견을 작성·제출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교수의 경우 그가 감정에 임하면서 사용하는 평가기준들은 그의 학술연구과정에서 일단은 검증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나 학술의 과학성, 객관성, 보편성 등에 대한 부단한 검증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감정의견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최소한 학계에 대하여는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경우에는 그 어떠한 외부적, 학술적 혹은 과학적 검증의 기회를 갖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 평가의 기준들을 외부-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 일반화되고 검증된 어떠한 준거로부터 획득하기보다는 철저한 비밀주의와 폐쇄주의에 입각하여 스스로 그러한 기준을 생산해낸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생산된 감정·평가의 기준들에 대한 외부적 접근이나 검증, 비판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이념적 자급자족의 체제를 구축해낸다.

여기서 더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러한 이념적 자급자족의 체제가 순수하게 공안문제연구소의 차원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

게 한정되지만 하여도 공안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모습보다는 나은 편이 된다. 수주기관인 공안기관의 요구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력의 요구에 종속되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폐쇄적 논리를 계발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이데올로기적 판단 기준 혹은 가치관련적 판단의 기준들이 시민사회와의 개방적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담당자의 의지와 욕구에 종속된 채 그것의 재생산결과로서 양산되는 한편 그 작동과정조차도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폐된 폐쇄공간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은 결코 ‘전문가적’ 평가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객관적 검증을 거친 과학적 보편성을 지닌 평가인 양 호도되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의 폭력을 대리행사하는 통로가 확보된다.

현대 국가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굳건하게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안보의 논리가 가장 비민주적인-폐쇄적 비밀주의에 험몰되어 있는 공

안문제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적용하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사상의 완전독점시장을 구축하고 그나마도 비밀주의와 폐쇄주의로 일관하면서 모든 이념논쟁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장악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공안문제연구소와 공안기관, 법원의 연합체-은 그 어떠한 대안도, 대항도, 비판이나 성찰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유일자the One가 되어 버린다.

5. 나가면서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였던 두 개의 지배이데올로기 축이 바로 안보와 성장의 논리였다. 개발독재론으로 대변되는 불균형성장정책은 국가적 특혜를 중심으로 정경유착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굳건한 지배계급이 하나의 신분적 지위를 가지고 구축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안보 이데올로기는 여전한 남북분단의 현실을 빌미삼아 의연히 통치의 내연을 구성하는 주요한 권력요소로서 남아 있게 된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세력들이 새로운 권력계기를 찾아 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그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최소한 이들에 있어서는 국가적 권력이 생동하는 최적의 상징이자 틀이기 때문이다.

혹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의 지향점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지적과 그 철폐에 쏠려 있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국가보안법간의 긴밀한 밀월관계를 고려한다면 후자의 폐지는 전자의 종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한편, 의연히 남아 있는 반인권적·반민주적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주요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자못 논외로 제껴졌던 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충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철폐운동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그 한 본보기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결락지점을 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자신의 침대와 칼로써 행인들을 처단하는 프루크루스테스처럼 기능한다고 해서 그를 응징하는 테세우스의 출현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루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탈을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안세력에 기대어 생존하는 권력주변부의 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연구원 십 수 명에 불과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이 기관에 대하여 비판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존재로 인하여 생명력을 획득하고 책임의 분산을 도모하는 공안기관의 조직논리에 의존하여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 공안문제연구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에 선행하여 요청되는 당대의 최우선과제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존재와 그의 작동과정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폭력성, 자의성 나아가 반인권성과 반민주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최대의 징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혹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세력을 처단하고, 국민들 사이의 불만

과 불평을 겸열하고, 국민의식을 '순화'하는 최전선에서 기능해 왔고⁸⁾ 현재도 기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허구적 은폐술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조종하는, 혹은 재단하는 기관으로 존속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첨병으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응징은 시민사회의 뜻이기 때문이다.

- 별첨

"한 줌"의 고통

한상희

「네가 타인의 칭찬을 받고 있는 동안, 넌 네 자신의 궤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궤도위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라」 - 자기를 향한 자유정신을 추구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대전후 전체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문장의 전체는 그대로 무시한 채 구미에 맞는 구절만 임의로 끊어와 이리저리 말을 꾸미고 그 뜻을 호도하는 행태를 斷簡取義(단간취의)라고 한다면, 그는 나치 이데올로그의 또 다른 소재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인권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사회 조차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너무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더 이상 그의 당·부당을 떠올릴 필요도 없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이라는 정치적 상징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한 가지 사족을 달고자 할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념에 대한 주의환기를 촉구한다는 허망된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국가보안법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던 소크라테스의 말은, 괴테에도 이어져 「악법이라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그리고 이 명제들은 우리 법체계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부 권위주의적 법률들의 타당성에 관한 항의가 나올 때, 그로부터 권력과 이득을 획득하는 계층들이 즐겨 사용하는 항변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두 賢者들의 「악법」은 악「법」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때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의적, 자의적으로 산되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8) 이 점은 첨부하는 발제자의 원고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당시 발제자는 부산의 모 신문사에 고정적으로 시평을 기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비판한 원고를 보냈다가 일언지하에 "잘려 버렸다."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이 용공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큰 파장으로 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겸열의 의식이며 소위 사회지도층을 통하여 이 자기겸열의 의식이 반강제적으로 전파·확산되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적용·강제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일단 정립되기만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건,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규적인 법을 말한다. 일정한 상황 속에서 자기행동의 결과를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 즉 사회질서를 담보하는 존재로서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논의에 의하면, 비록 악법이라도 위정자에 의하여 제대로 지켜질 때에만 무질서보다 나은 것이지, 그 자체가 편의적이고 전단적인 권력도구로 화할 때에는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라 국가이전의 상태 -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법집행의 과정 속에서 나온다. 우선, 그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당국이나 심지어 법원조차도 어떠한 행동이나 의도가 이 법의 규율대상인가의 법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을 중심으로 개념구성이 되어 있고 이에 유리한 행동이나 의도를 내어 놓을 때에는 처벌된다고 하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 이적성이 구체적인 행위와 연결될 때에는 그 어느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자 그대로의 귀결이, 코결이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과 대국민통제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행위는 대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또는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이고 어떤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름처럼 우려가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극악무도한 용공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중잣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약한 법기준은,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상황의 인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때의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기까지 한다. 위에서 말한 斷簡取義의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주장을 근거지를 논리를 찾기 위하여 어쩌다 '이적표 현물'을 뒤적이게 되어도 그는 용공분자로 몰리고 만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책들 중 어느 한 몸짓이나 구절이 우연히도 이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전후 맥락이나 의도들을 내팽개친 채 그 부분만을 부각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다른 장님의 판단을 배척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문민'정부가 외쳤듯이 개방과 포용을 모토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이다. 이것은 또한 사법당국이 진정으로 수호하여야 할 대상이자 목표이며, 말 많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로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승만 정권 시절처럼, 법을 떠난 채 「타도하자 빨갱이」식의 배타적, 폭력적 선동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는 아닌 것이다. 속된 말로, 치고 빠지는 식의 법운용은 악법보다도 더 나쁜 무질서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 혁명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선동이 우리 헌법의 적이라면, 체제수호라는 명분하에 전단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병소를 이룬다. 한국국가의 성격을 「이 완된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용공적'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몫을 차지함에 있어 항상 입안의 가시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인권문제에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이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진정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일전에 보수를 자처하는 한 정당의 우두머리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두고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 법으로 고통을 받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언필칭 옳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 한 주먹 사람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체 국민의 뼈 아픔으로 확산되는 현상들을 너무도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 그

한 주먹 사람들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뇌의 원천을 씻어 주기 위하여 우리와 당국과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하며, 또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니체를 인용하자. 그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썩은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썩지 않으려면 바다가 되어야 한다.」